

의안번호	제 163 호
의 결 연 월 일	2015년 월 일 (제339회)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강현삼 의원 등 7명
발의연월일	2015년 4월 13일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현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
----------	-----

발의연월일 : 2015. 4. 13.

발 의 자 : 강현삼, 박병진, 임순목,
김봉희, 임현경, 이광진,
엄재창

1. 개정이유

충청북도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장사무 규정상 정무부지사 소관 위원회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충청북도교통위원회 위원장 변경(안 제4조)

1) 행정부지사 → 교통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

나. 기타 조문 정비(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 균형건설국 교통물류과와 협의

라.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교통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13조 중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 충청북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u>운영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u>행정부지사</u> 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관련 업 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p> <p>제9조(<u>해촉</u>)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u>해촉</u>할 수 있다. 1. · 2. (생 략)</p> <p>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위원 에게는 예산의 <u>범위 내에서</u> 「충청 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조(목적) ----- ----- ----- ----- <u>운영에</u>----- ----- ----- ----- .</p> <p>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교통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u>----- ----- ----- .</p> <p>제9조(<u>위원의 위촉 해제</u>) ----- ----- ----- <u>위촉 해제</u>----- . 1. · 2. (현행과 같음)</p> <p>제13조(수당 및 여비) ----- ----- <u>범위에서</u> 「충 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 례」----- ----- .</p>

관계 법령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부지사)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

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3. 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무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
2. 의회·정부·국회·정당·사회단체 등과 관련되는 업무 협조
3. 도정 홍보 및 언론기관 협조
4. 경제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행정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3조(균형건설국에 두는 과)

③ 균형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⑤ 교통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심의